

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

(앞쪽)
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

②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--------	-----------------

③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

계정 과목	구 분	자체 연구개발비				
		인건비 및 사회보험료		재료비 등		기 타
		인원	⑥ 금액	건수	⑦ 금액	건수 ⑧ 금액
합 계						
계정 과목	구 분	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		인력개발비		⑪ 총 계 (⑥+⑦+⑧+⑨+⑩)
		건수	⑨ 금액	건수	⑩ 금액	
합 계						

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

⑫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 (=⑪)	⑬ 직전 4년 발생액 (⑭+⑮+⑯+⑰)	⑭ (직전 1년)	⑮ (직전 2년)	⑯ (직전 3년)	⑰ (직전 4년)
⑱ 직전 4년간 연 평균발생액 (⑬/4)		⑲ 직전 3년간 연평균발생액 [(⑭+⑮+⑯)/3]		⑳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[(⑮+⑯)/2]	
㉑ 증가발생액 (⑫-⑭)					

④ 공제세액

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	중소기업	㉒ 대상금액 (= ㉑)		㉓ 공제율		㉔ 공제세액 (㉒ × ㉓)
				25%		
	중소기업 유예 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	㉕ 대상금액 (= ㉑)	㉖ 유예기간 종료연도	㉗ 유예기간 종료 이후 년차	㉘ 공제율	㉙ 공제세액 (㉕ × ㉘)
					종료 이후 1~3년차 20% 종료 이후 4~5년차 15%	
	중견기업	㉚ 대상금액 (= ㉑)		㉛ 공제율		㉜ 공제세액 (㉚ × ㉛)
				8%		
	일반기업	㉛ 대상금액 (= ㉑)	공제율			㉝ 공제세액 (㉛ × ㉞)
			㉞ 기본율	㉟ 추가	㊱ 계 (㉞+㉟)	
			0%			
	증가발생금액 공제 (직전 4년간 연구·인력개발비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 또는 ㉑ < ㉒ 경우 공제 제외)		㉚ 대상금액 (= ㉑)		㉛ 공제율	㉜ 공제세액 (㉚ × ㉛)
			%			
㉑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		중소기업 (㉔와 ㉜ 중 선택)				
		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(㉙와 ㉜ 중 선택)				
		중견기업(㉜와 ㉜ 중 선택)				
		일반기업(㉝과 ㉜ 중 선택)				

⑤ 출연금 등 수령명세 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 단서 관련)

= 연구·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

구분	출연금 교부처	관련 법령	수령일	수령 금액	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

⑥ 연구소/전담부서/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

구분	인정일 (고시일)	취소일	연구개발 인력							
			계		연구전담요원		연구보조원		기 타	
		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'일반연구·인력개발비'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
- "중소기업"이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.
- 재료비 등의 "⑦ 금액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·부품·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(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·서체·음원·이미지의 대여·구입비를 적습니다.[별표6 제1호가목2) 항목]
- 기타의 "⑧ 금액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·시험용 시설 임차(이용)비용을 적습니다.[별표6 제1호가목3) 항목]
- 인력개발비의 "⑩ 금액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2호에 따른 위탁훈련비,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을 적습니다.
- 공제율의 "㉓ 추가"란: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·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2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.
- ⑤, ⑥의 "구분"란: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(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).
- "⑤ 출연금 등 수령명세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- "⑥ 연구소/전담부서/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

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

(앞쪽)

1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	② 사업자등록번호							
	③ 대표자 성명		④ 생년월일							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		(전화번호:)							
2 과세연도	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						
3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										
기술명	구 분	계정과목	자체 연구개발비		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	⑨ 합계 (⑥+⑦+⑧)				
			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	⑦ 재료비 등						
합 계										
4 공제세액										
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	중소기업	⑩ 대상금액(=⑨)	공 제 율			⑭ 공제세액 (⑩×⑬)				
		⑪기본율	⑫추가	⑬계(⑪+⑫)						
		30%								
	중소기업 외의 기업	⑮ 대상금액(=⑨)	공 제 율			⑰ 공제세액 (⑮×⑱)				
⑯기본율		⑲추가	⑳계(⑯+⑰)							
		20% 또는 25%								
5 출연금 등 수령명세 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 단서 관련) = 연구·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										
구분	출연금 교부처	관련 법령	수령일	수령금액	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					
6 연구소/전담부서/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										
구분	인정일 (고시일)	취소일	연구개발 인력							
			계		연구전담요원		연구보조원		기 타	
		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4항에 따라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- 신성장·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- 전담부서의 조직·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-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분하여 제출(일반 연구개발업무,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) -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-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·부품·원재료·시약류 구입 명세서, 소프트웨어·서체·음원·이미지의 대여·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-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와 신성장·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- 그 밖에 신성장·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작성 방법

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'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'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
- "중소기업"이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.
- "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"란의 합계는 해당 연도의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[별지 제3호 서식 부표(2)] 1. 인건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지급액 중 ②기술구분코드가 '신성장·원천기술 코드(01)' 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- "⑦ 재료비 등"란: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·부품·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·서체·음원·이미지의 대여·구입 명세서를 적습니다.
- "⑦ 재료비 등"란의 합계는 [별지 제3호서식 부표(2)] 2. 재료비 등 발생 명세의 '⑦신성장·원천기술 재료비'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- "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"란의 합계는 [별지 제3호서식 부표(2)] 3.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의 ⑩금액 중 ⑩기술구분코드가 '신성장·원천기술 코드(01)' 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- "⑫, ⑬ 추가"란: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(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)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.
- "⑮ 기본율"란: 20%(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25%)를 적습니다.
- ⑤, ⑥의 "구분"란: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(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).
- "⑥ 출연금 등 수령명세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- "⑥ 연구소/전담부서/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4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▪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▪ 전담부서의 조직·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▪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일반 연구개발업무,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) ▪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▪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·부품·원재료·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▪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, 신성장·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▪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‘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’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
1. "중소기업"이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.
2. "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"란: 합계는 해당 연도의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[별지 제3호 서식 부표(2)] 1. 인건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지급액 중 ②기술구분코드가 ‘국가전략기술 코드(02)’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3. "⑦ 재료비 등"란: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·부품·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합계를 적습니다.
4. "⑦ 재료비 등"란의 합계는 [별지 제3호서식 부표(2)] 2. 재료비 등 발생 명세의 ‘⑧국가전략기술 재료비’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5. "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"란의 합계는 [별지 제3호서식 부표(2)] 3.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의 ⑩금액 중 ⑩기술구분코드가 ‘국가전략기술 코드(02)’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6. "⑫, ⑬ 추가"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.
7. "⑭ 기본율"란: 30%(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35%)를 적습니다.
8. ⑤, ⑥의 "구분"란: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(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).
9. "⑤ 출연금 등 수령명세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10. "⑥ 연구소/전담부서/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(앞쪽)

과 세 연 도	. . . ~ . . .	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발생 명세	법 인 명	
			사업자 등록번호	

1. 인건비 발생 명세

(단위: 원)

① 연구과제명	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			
	성명	생년월일	인건비지급액	연구전담 등 구분
합 계				
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
2. 재료비 등 발생 명세

(단위: 원)

③ 연구 과제명	④ 재료비 등				
	계	건본품 등 (별표 6 1.가.2))	임차료 등 (별표 6 1.가.3))	위탁·공동연구비 (별표 6 1.나)	기타 (별표 6 1.다~사)
합 계					

3.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

(단위: 원)

⑤ 연구 과제명	⑥ 연구개발비				⑦ 금액	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
	상호 또는 성명	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	연구착수일	연구종료일		
합 계						

작성 방법

※ 각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4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[별지 제3호서식(1)]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
1. 인건비 발생 명세

가. "① 연구과제명"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.

나. 1명의 연구원이 여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
다. "② 연구개발 인력 개발비" 합계는 [별지 제3호서식(1)] 자체 연구개발비의 인건비의 '⑥금액'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
라.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(다만,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, 퇴직급여충당금,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).

마. "연구전담 등 구분"란은 []에 '연구전담요원', '연구보조원', '기타' 중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* "연구전담요원"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* "연구보조원"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* "기타"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.

2. 재료비 등 발생 명세

가. "③ 연구과제명"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.

나.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을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(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)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.

다. "④ 재료비 등"란의 합계는 [별지 제3호서식(1)] 자체 연구개발비의 재료비 등의 '⑦금액'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
3.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

가. 해당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(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) 제1호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.

나. "⑤ 연구과제명"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.

다. "⑥ 연구개발비"란은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(재위탁 포함)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(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)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.

라. "⑦ 금액"의 합계는 [별지 제3호서식(1)]의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의 '⑨금액'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
마. "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"란은 위탁·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.

(앞쪽)

과 세 연 도	. . . ~ . . .	해당 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	법 인 명 (상 호)	
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인건비 발생 명세

(단위: 원)

① 연구 과제명	② 기술 구분 코드	③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			
		성명	생년월일	인건비지급액	연구전담 등 구분
합 계					
	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	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	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	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	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
2. 재료비 등 발생 명세

(단위: 원)

④ 연구 과제명	⑤ 기술 구분코드	재료비 등		
		⑥ 총계(=⑦+⑧)	⑦ 신성장·원천기술 재료비	⑧ 국가전략기술 재료비
합 계				

3.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

(단위: 원)

⑨ 연구 과제명	⑩ 기술 구분코드	⑪ 연구개발비				⑫ 금액	⑬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
		상 호 또는 성명	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	연구 착수일	연구 종료일		
합 계							

작성 방법

※ 각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4항에 따라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[별지 제3호서식(2)]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[별지 제3호서식(3)]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
또한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,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 연구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.

※ 공통 사항

가. “①,④,⑨ 연구과제명”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.

나. “②,⑤,⑩ 기술구분 코드”란은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“01”,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“02”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
1. 인건비 발생 명세

가.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(다만,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, 퇴직급여충당금,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약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).

나. "연구전담 등 구분"란은 []에 '연구전담요원', '연구보조원', '기타' 중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* "연구전담요원"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* "연구보조원"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* "기타"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.

2. 재료비 등 발생 명세

가. "⑦ 신성장·원천기술 재료비"란은 해당 과세연도에 신성장·원천기술 개발업무를 위해 사용된 재료비를 적으며, "⑧ 국가전략기술 재료비"란은 해당 과세연도에 국가전략기술 개발업무를 위해 사용된 재료비를 적습니다.

3.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

가. 해당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 비용을 적습니다.

나. "⑪ 연구개발비"란은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위탁(재위탁 포함) 및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의 현황 등을 적습니다.

다. "⑬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"란은 위탁·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.

